

하남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3148
----------	------

제출연월일 : 2025. 8. .

제출자 : 하남시장

1. 제안이유

- 하남시 전체 인구의 17%에 해당(2025. 1. 기준)하는 18세 미만 아동 인구는, 교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2028년에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어린이 전용 놀이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바, 하남시 어린이회관을 건립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시설 및 기능,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13조)
- 나. 이용 신청 및 제한 관련(안 14조~제20조)

3. 제정안: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6. 예산수반 사항: 덧붙임(비용추계서)

7. 입법예고 결과

- 가. 예고 기간: 2025. 06. 11.~2025. 07. 02.(21일간)
- 나. 의견 내용: 의견 없음

8. 부서협의 결과

-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해당 없음
- 나. 성별영향 분석평가: 개선의견 없음
- 다. 부패영향 분석평가: 원안 동의

9. 참고사항 : 해당 없음

10. 관련부서: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하남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53조에 따른 아동전용시설인 하남시 어린이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회관”이란 영유아 및 어린이의 창의력 증진 및 정서·신체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각종 보육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 전용 복합 문화 시설을 말한다.
2. “체험관”이란 영유아 및 어린이의 창의력 증진과 정서·신체 발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놀이와 체험을 통한 전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
3. “이용료 등”이란 회관 시설의 입장료, 수강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 시설 대관료 등을 말한다.
4. “이용자”란 하남시 어린이회관 체험관 및 공연장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하남시 어린이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그 위치는 경기도 하남시 내에

둔다.

제4조(시설 및 기능) ① 회관은 체험관, 공연장, 운영사무실, 편의공간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

② 회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 및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창의적인 체험학습 기회 제공
2. 건강한 가족문화 활성화 및 지역사회 보육 환경 향상을 위한 교육문화사업
3. 영유아 발달지원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회관의 운영·관리) ① 회관의 운영 및 관리는 하남시장이 한다. 다만, 회관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 수행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탁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사무위탁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회관 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회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전 승인) ① 수탁자는 회관 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에 관

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보건복지부 지침의 범위 안에서 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 규정으로 정하여 회관을 운영해야 하며, 이 경우 운영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 및 자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용도 전환하여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고를 제외한 재산의 손해나 망실에 대해서는 변상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탁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라 보험가입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련 법령 및 위·수탁 협약내용 및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

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때
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때
4.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5.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6.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수탁자는 위탁 계약이 해지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회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수탁자는 회관 운영에 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 운영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등 사회복지사업 관계법령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수탁자는 회관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어린이회관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회관 내 자체 규정으로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신청 및 허가) 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이용료 등의 징수) 시장(수탁된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제16조와 제17조에서 같다)은 회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이용요금 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관 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하남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7. 65세 이상 어르신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용자로서 프로그램 이용 조건을 위반한 사람
2. 회관 내의 관람 질서유지 또는 그 밖의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제18조(이용자의 손해배상) 이용자가 체험전시물 및 회관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여성아동과
입 안 자	부서장 직위 · 성명	여성아동과장 윤 정 심
	팀장 직위 · 성명	아동친화드림팀장 김 은 형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	이 지 연 (031-790-5597)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하남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하남시 어린이회관 운영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유사시설인 서울상상나라와 경기도 어린이박물관 평균 면적당 사업비, 운영관리비를 하남시 어린이회관의 계획 규모에 적용하여 산정함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총 소요액	540	1,011	1,015	1,020	1,023

다. 재원조달방안: 자체재원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해당없음

4. 작성자: 복지국 여성아동과장(윤정심)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343,036	686,073	686,073	686,073	686,073	3,087,328
세 출		539,736	1,011,086	1,015,010	1,019,893	1,023,295	4,609,020
○ 어린이회관 운영비		539,736	1,011,086	1,015,010	1,019,893	1,023,295	4,609,020
재원 조달		343,036	686,073	686,073	686,073	686,073	3,087,328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43,036	686,073	686,073	686,073	686,073	3,087,328
	지방세						
	세외수입						
	이용료	343,036	686,073	686,073	686,073	686,073	3,087,328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관계법령 발췌서

1

아동복지법

[시행 2024. 2. 6.] [법률 제20218호, 2024. 2. 6., 일부개정]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오락 시설, 교통시설, 그 밖의 서비스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편의설비를 갖추고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